

2024년 중앙교섭 의견 접근안

가. 산별협약 개정 및 신설 요구안

1) 좋은 일자리 창출

제41조 【신규채용】

- ① 회사와 조합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노동조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규채용 확대에 적극 협력한다.
- ② 노사는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 저감과 사업장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일자리를 합동으로 조사하고 신설이 필요한 경우와 퇴직으로 인해 자연감소된 인원이 있는 경우 신규채용하되, 여성 퇴직 일자리는 여성으로 신규채용한다. 단, 세부사항은 사업장별 노사합의로 정한다.
- ③ 회사는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가 있는 부서에서 신규채용을 하게 되는 경우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사내 채용절차에 따라 우선 채용한다.
- ④ 회사는 연간 신규채용 시 제2항부터 제3항에 의한 채용인원과 회사의 노동자 분포를 감안하여 만 29세 이하의 청년을 50% 이상 채용하도록 한다. 단, 특수직종의 경우 노사합의로 한다.

2) 금속산업 최저임금

제20조 【금속산업 최저임금】

-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10,150원과 월 통상임금 2,293,9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 ② (현행 유지)
- ③ (현행 유지)
- ④ 적용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다.

3)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제23조 【임금차별 해소】

- ① 항 신설, 내용 동일
- ② 회사는 이주노동자 조합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임금을 차별하지 않는다.

제6장 비정규직 · 이주노동자 관련

제47조 【사내하청 · 이주노동자의 처우개선】

- ①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이주노동자를 포함한다. 이하 동조에서 같다.)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
- ② ~ ⑥ 항 현행 유지

제50조 [이주노동자의 처우개선] _신설

- ① 회사는 취업규칙 제·개정, 근로계약서 체결, 임금명세서 발급 등의 경우에 자국어로 번역한 문서를 제공한다. 단, 취업규칙의 경우 번역본 제공 시기와 순서 등은 노사 간 협의한다.
- ② 회사는 이주노동자에게 숙소·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제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정주노동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

나.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사)금속산업사용자협회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노사 자율의 원칙과 관행을 감안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개선을 공동으로 요구한다.

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회는 기후위기에 따른 탈탄소 전환,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수요 변동,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제기하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노사는 금속산업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확대하는 것이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 공동의 책무임을 인식한다.

노사는 정보의 투명한 공유를 통해 기후위기와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며, 이를 기반으로 공급망 전반에서 고용이 축소되는 부문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노사는 탈탄소와 기술혁신 과정에서 새롭게 필요한 직무를 함께 조사·발굴해 고용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되, 양질의 청년·고령·여성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다.

노사는 정책협의를 통해 양질의 국내 일자리 확충을 촉진하는 방향의 산업정책·노동시장정책·노사관계정책 대정부 요구를 마련하며, 연내 정부에 제출한다.

2024년 7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장 창 열

(사)금속산업사용자협회
회장 박 근 형